

●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853호

대구울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고시

대구울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제7조의4 및 제7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산업단지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가. 명 칭 : 대구울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

나. 위 치 : 대구광역시 동구 울하동 814-3 일원

다. 면 적 : 167,092㎡

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

- 스마트 기반시설, 에너지 자립, 친환경 공간 등 도심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표준 모델 제시
- 지능형 도시기반시설로 통합적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
-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, 사람 중심의 쾌적한 그린 산업단지 조성

3.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

- 기 관 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, 대구도시개발공사
- 성 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,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
- 주 소
 - 한국토지주택공사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 - 대구도시개발공사 :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(고성동3가)
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

- 개발기간 : 2017년 ~ 2026년
- 개발방법 : 공영개발방식

5.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

- 주요 유치업종 : 지식기반첨단산업, 지식기반첨단서비스산업, 지식기반서비스산업
- 유치업종 배치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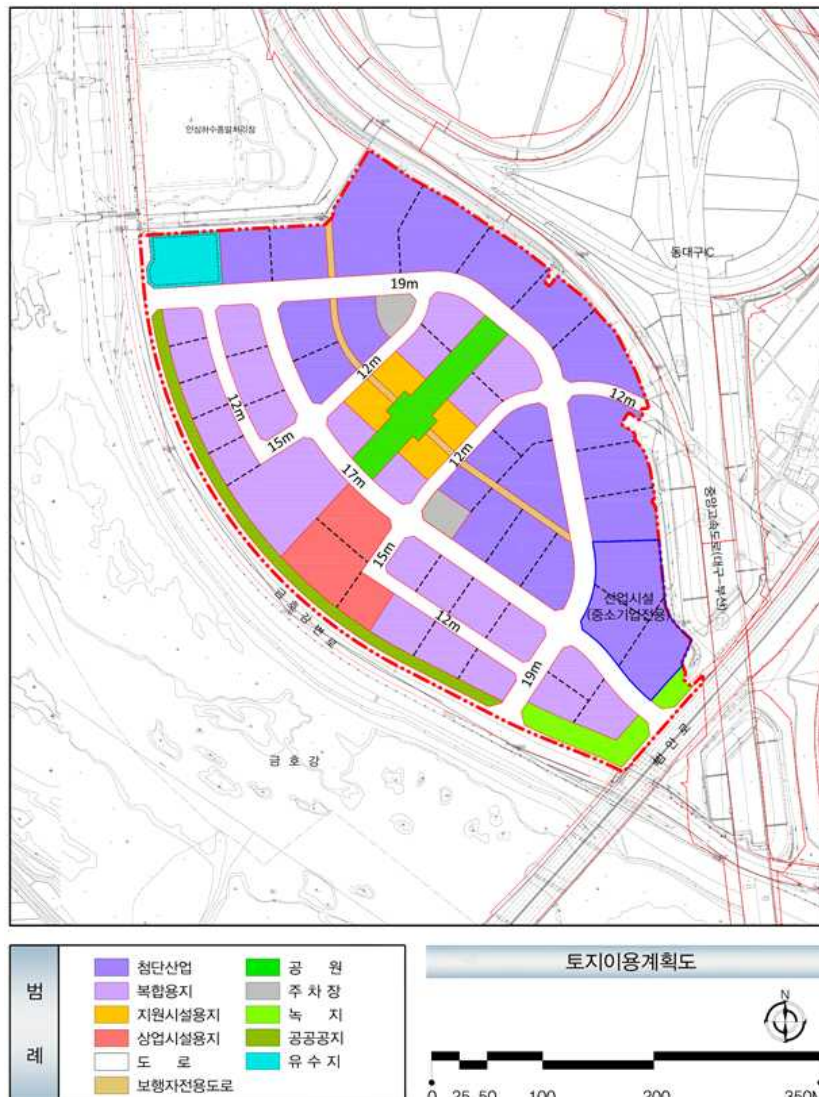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고
합계	99,370	100.0	
지식기반첨단산업(A)	40,456	40.7	
지식기반첨단서비스산업(B)	25,871	26.0	
지식기반서비스산업(C)	33,043	33.3	

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

○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 적(m ²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167,092	100.0	
산업시설용지	소 계	99,370	59.5	
	첨단산업용지	59,116	35.4	
	복합용지	40,254	24.1	
지원시설용지		4,211	2.5	
상업시설용지		7,016	4.2	
공공시설용지	소 계	56,495	33.8	
	공 원	5,034	3.0	
	녹 지	3,293	2.0	
	공공공지	4,901	2.9	
	주차장	2,065	1.2	
	유수지	3,141	1.9	
	도 로	36,265	21.7	
	보행자도로	1,796	1.1	

○ 토지이용계획도



○ 도로시설계획

류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	비고
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m ²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m ²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m ²)	노선수 (개소)	연장 (m)	면적 (m ²)	
합계	17	3,128	38,061	-	-	-	5	1,345	24,109	10	978	9,932	기타 2개소
광로	-	-	-	-	-	-	-	-	-	-	-	-	
대로	-	-	-	-	-	-	-	-	-	-	-	-	
중로	10	2,023	32,245	-	-	-	5	1,345	24,109	5	678	8,136	
소로	5	300	1,796	-	-	-	-	-	-	5	300	1,796	보행자 전용도로 5개소
기타	2	805	4,020	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등									

○ 기타 주요기반시설 계획(상수도 공급계획, 하수도 계획, 폐기물처리계획 등) : 대구울하 도시
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738호)과 동일함

7.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주요 계획

- 도심과 인접하여 청년층 근로자 및 시민들을 위한 여가·문화·휴식을 위해 스마트 커뮤니티 스테이션, 스마트 미디어클래스, 디지털 미디어월 등 첨단 복합문화공간 계획
- 1.21MW 태양광 발전시설, 2.64MW 연료전지 발전시설, 분산전원 등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탄소배출 37% 감축
-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통합관제센터, 네트워크 인프라, 스마트 그리드 구축
- 스마트 횡단보도, 스마트 교차로,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
- 근로자 휴식·운동을 위한 녹지계획, 클린로드 시스템, 물순환 회복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

8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

- 해당없음

9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

- 대구울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38호)과 동일함

10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-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(055-922-4822), 대구도시개발공사 스마트시티사업처(053-350-0142)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